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4~5
----------	--------

제출년월일	2004. 1
제출자	보건소장

■ 제정이유

- 최근 노인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건은 여전히 열악해 노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이들 대부분은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에게 정신적·경제적인 큰 고통을 주고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군립 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의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정한 치료 등을 위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함(안 제6조)
-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등 의료수가,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공유재산은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 의료법(제30조)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치매요양병원은 거창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치매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운영) ①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사업비(병원건립비, 의료장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절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 간호, 보호의 기본방침, 지역 행정과 연계 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7.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원 및 퇴원)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정리) 치매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병원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